

# 사전자산배분기준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사전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 및 투자대상자산)

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와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. 또한 투자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0조 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다.

### 제3조 (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등)

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“사전자산배분”이라 함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운용담당자”라 함은 실제펀드 및 가상의 펀드를 운용하는 직원 말한다.
- ③ “매매담당자”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, 매각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

## 제2장 사전자산배분

### 제5조 (자산배분원칙)

- ① 펀드별 자산배분은 특정수익자 또는 특정 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② 펀드별로 취득, 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. 단, 균등한 가격은 다수의 펀드에 대해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③ 동일한 종목에 대한 펀드별 배분은 지정가격이 아닌 경우에는 주문접수순으로 배분한다. 이때, 주문시간이 다른 동일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.

④ 취득, 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펀드별 배분 비율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여야 한다.

⑤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,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.

1. 법규 등(약관, 운용계획서 포함) 위반 및 위반 방지를 위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

2.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

3. 위 사유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

#### 제 6 조 (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)

자산운용회사는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

#### 제 7 조 (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)

①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펀드별로 주문금액 또는 수량, 가격,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펀드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이 이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자산배분내역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 5 조 제⑤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전산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집행

#### 제 8 조 (매매주문서의 작성)

① 운용담당자는 펀드별로 종목, 주문금액 또는 수량, 가격,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, 채권종류별,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, 지정가격, 시장가격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.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.

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시 펀드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, 수량만을 작성하고, 매매금액 및 가격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# 제 9 조 (매매주문의 집행)

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자산 배분 및 자산배분내역서 작성

### 제 10 조 (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)

-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, 배분가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

### 제 11 조 (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분리)

제 2 조에 정하는 자산에 대해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, 매각등의 실행하는 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5 조에서 정하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금지 예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제7장 기 타

### 제 12 조 (개정)

이 기준의 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, 법과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부 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지침은 2009년 1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지침은 2009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